

제1573호
2018.11.15.(목)

발행인: 동작구청장
편집인: 홍보전산과장

이창우
김미자
전화: 820-1458
FAX: 820-9996

| | |
|------------|-------|
| 선 람 | 기관의 장 |
| | |

동작구보

차 례

| | |
|--|----|
| ◎ 고 시 | |
| 제2018-91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 |
| 제2018-92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 |
| 제2018-93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3 |
| 제2018-95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4 |
| 제2018-96호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6 |
| ◎ 공 고 | |
| 제2018-1079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 8 |
| 제2018-1087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 |
| 제2018-1088호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 16 |
| 제2018-1090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 19 |
| 제2018-1098호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21 |
| 제2018-1104호 : 산지구분도안 공고 | 23 |
| 제2018-1106호 : 공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 24 |
| ◎ 정 정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1077호 정정 | 25 |
| ◎ 인사발령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 | | | | | | | |
| 람 | | | | | | | | | | | | | | | | | | | | |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8 - 9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상도동 335-45 | 대방동6길 37 | 2010-06-10 | 대방동6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세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
| 상도동 471-4 | 상도로62길 81-2 | 2010-06-10 | 상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서른 한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
| 사당동 426-8 | 사당로22길 64-3 | 2010-06-10 | 사당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열한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
| 신대방동 385-17 | 여의대방로16길 41 | 2010-06-10 | 여의대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여덟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9070)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8 - 9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등의 멸실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에 의거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 도로명주소 | 폐지 사유 | 도로명주소 폐지일 |
|----------------|-------|------------|
| 노량진로 194-4 | 건물철거 | 2018-9-14 |
| 상도로13길 34 | 건물철거 | 2018-9-14 |
| 사당로22길 68 | 건물철거 | 2018-10-4 |
| 장승배기로3길 26-1 | 건물철거 | 2018-10-26 |
| 장승배기로5길 5-12 | 건물철거 | 2018-10-26 |
| 상도로38길 61 | 건물철거 | 2018-10-26 |
| 여의대방로24다길 43-1 | 건물철거 | 2018-11-6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9070)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는 새로이 부여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8 - 9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등의 멸실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에 의거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 도로명주소 | 폐지 사유 | 도로명주소 폐지일 |
|-----------|--------|-----------|
| 노량진로 121 | 건물 부존재 | 2018-11-8 |
| 노량진로 113 | | |
| 노량진로 111 | | |
| 노량진로 109 | | |
| 노량진로 107 | | |
| 노량진로 105 | | |
| 노량진로 103 | | |
| 노량진로 99-1 | | |
| 노량진로 97-1 | | |
| 노량진로 95-2 | | |
| 노량진로 93-1 | | |
| 노량진로 93 | | |
| 노량진로 91 | | |
| 노량진로 89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9070)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는 새로이 부여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8 - 9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 1. 지정목적 :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흡연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및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2. 지정일자 : 2018년 12월 1일
- 3. 지정대상 : 강남중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통학로 일부
- 4. 금연구역 지정 장소 및 범위

| 연번 | 대상학교명 | 지정장소 및 범위 | 길이(M) |
|----|-------|-------------|-------|
| 1 | 강남중학교 | 대방동15다길 보행로 | 137M |



| 연번 | 대상학교명 | 지정장소 및 범위 | 길이(M) |
|----|----------|-----------|-------|
| 2 | 서울공업고등학교 | 대방동1길 보행로 | 300M |



5. 금연구역 내에서의 금연법령이행 위반자(흡연자) 단속

- 계 도 기 간 : 2018. 12. 1. ~ 2019. 2. 28.
- 과태료 부과 : 2018. 3. 1. 부터
- 과태료 금액 : 10만원

6. 고시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 보건기획과(☎ 820-9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8 - 96호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정비구역 지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07호(2008.9.1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0.3.4. 조합설립인가, 동작구고 시 제2013-151호(2013.12.19.)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명칭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58-1번지 일대
- 3. 시 행 면 적 : 74,482㎡
 가. 택 지 : 55,502.7㎡ (공동주택 53,471.8㎡, 종교시설 2,030.9㎡)
 나. 정비기반시설

| 합 계 | 도 로 | 공 원 | 녹 지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
| 18,979.3㎡ | 10,295.4㎡ | 4,494.2㎡ | 2,269.6㎡ | 332.7㎡ | 861.2㎡ | 726.2㎡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 성 식)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67, 3층(흑석동)
-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 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18.11.09.
- 7.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조합)로 부터의 사업 시행변경인가 신청(건축계획 변경 및 세입자대책 세대 변동사항) 발생

8. 변경내용

가. 건축계획 변경사항

| 구 분 |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 건축계획 | 대지면적 | 53,466.8㎡ | 53,471.8㎡ | 촉진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7호, 2017.11.16.)에 따른 대지면적 정정 |
| | 연면적 | 158,655.9584㎡ | 158,675.1309㎡ | 증) 19.1725㎡ |
| | 건폐율 | 29.7076% | 29.8872% | 증) 0.1796% |
| | 용적율 | 203.9242% | 204.0398% | 증) 0.1156% |
| | 층 수 | 지하3층, 지상28층 (최고높이 79.95m) | 지하3층, 지상28층 (최고높이 79.95m) | 변경 없음 |
| | 주차대수 | 1,353대 | 1,352대 | 감) 1대 |
| | 세대수(임대주택) | 1,073세대(162세대) | 1,073세대(162세대) | 변경 없음 |

나. 세입자대책 세대(임대, 주거, 비대상)의 변동사항

| 내 용 | 대 상 세대수 |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 임대주택 지급세대 | 비대책 세 대 | 비 고 |
|-----|------------|----------------------|---------------|--------------|------------|-----|
| 기 정 | 320 | 172 | 65 | 10 | 73 | |
| 변 경 | 321 | 173 | 65 | 10 | 73 | |

9. 기타 관련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도시개발과(☎820-980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107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 2. 공고기간 : 2018. 11. 15. ~ 11. 29.
- 3. 공고대상 : 불법명의 차량 1대

| 연 번 | 자동차등록번호 | 자동차명 | 소유자명 | 운행정지 명령사유 |
|-----|---------|------|------|-----------------------|
| 1 | 07주6882 | 쏘렌토 | 니*훈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 |

- 4. 공고장소 : 동작구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5. 공고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다.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우리구청에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988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108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서울형 모델 정립·실행에 따라 우리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을 변경하여 친환경자동차 선택 촉진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 기준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추가(안 제3조제4항, 별표 1 및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전화 : 820-9889, fax 820-9982, E-mail : musue@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주차장 공유실적”을 “주차장 공유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8조 제1항 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를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29조 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연4회”를 “연 4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금상환시”를 “원금 상환 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업계획서”를 “사업 계획서”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만료전이라도”를 “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서류”를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7조 제목 “(주차장 설치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공사”를 “보조 공사”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9호서식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설치보조”를 “설치 보조”로, “조성후”를 “조성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보조”를 “설치 보조”로 한다.

별표 1의 주차공유 실적을 주차장 공유실적으로 하고, 주차장 공유실적란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4) | 1등급 | 4 | 1등급 표지부착 차량에 한함 |
|----------------|-----|---|-----------------|

관할 동 거주여부란 중 “10”을 각각 “6”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우선배정 순위 중 “주차장 공유실적”을 “주차장 공유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2019년 3월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주거지역의 전용 주차구획) ① ~ ③ (생략)</p> <p>④ 거주자우선주차권은 구획과의 거리, 신청 후 대기기간, 관할 동 거주여부, <u>주차장 공유실적 등 배정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에 의거 배정하고, 세부 배정기준표는 별표1로 정한다. 다만 지정주차 대상의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u></p> | <p>제3조(주거지역의 전용 주차구획)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주차장 공유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u> ----- ----- <u>별표 1</u>----- -----.</p> |
| <p>제7조(용자의 대상) ① <u>조례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자대상의 범위는,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1/2 이상,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 또는 매입한 자로 한다.</u></p> | <p>제7조(용자의 대상) ① --- <u>제28조제1항제3호-</u> ----- ----- -----.</p> |

② (생 략)

제8조(용자의 한도) ① 용자는 해당 연도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한다.

② (생 략)

제9조(용자의 대출기간 및 이자율) ①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용자의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4회로 한다.

② (생 략)

③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10조(용자금의 대출절차) ① 용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추가 확보자금 용자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에 관련 증명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1조(용자금의 일시 상환)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용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불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납부하는 날까지만 징수한다.

제13조의2(보조의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29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용자의 한도) ①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용자의 대출기간 및 이자율) ① --- 제29조제2항----- 연 4회-----.

② (현행과 같음)

③ ----- 원금 상환 시 -----.

제10조(용자금의 대출절차) ① ----- 사업 계획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용자금의 일시 상환) ----- 만료 전이라도 -----.

제13조의2(보조의 신청 및 결정) ① -----

조제1항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서류라 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 략)

② (생 략)

제17조(주차장 설치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
준) ① 구청장이 대행하는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공사자재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8조(보조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
9호서식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19조(의무사항의 준수) ①주차장 설치보조를
받은 자는 주차장 조성후 5년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폐쇄 등을 할
수 없다.

② 주차장 설치보조를 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 받
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 정하는 서류-----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
기준) ① ----- 보조 공사---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조대상자의 관리) -----
----- 별지 제9호서식의 -----
-----.

제19조(의무사항의 준수) ①----- 설치 보조---

----- 조성 후 -----

-----.

② ----- 설치 보조-----

[별표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 기 준 | | 점수 (100) | 증빙서류 | |
|----------------------|-------------------------|------------------------|--|------------------------------|
| 지정주차 (현행과 같음) | | 선배정 | 현장확인 우선배정 | |
| | 구획 과의 거리 (40) | 주택/점포로부터 30M이내 | 40 | 집/점포 주출입문 으로부터 직선거리 |
| | | 주택/점포로부터 60M이내 | 30 | |
| | | 주택/점포로부터 90M이내 | 20 | |
| | | 주택/점포로부터 120M 이내 | 10 | |
| 주택/점포로부터 120M 초과 | | 5 | | |
| 일반 주차 (100) | 신청후 대기 기간 (40) |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 40 | 자체확인 |
| | | 신청일~현재 대기 2년 이상 3년 미만 | 30 | |
| | | 신청일~현재 대기 1년 이상 2년 미만 | 20 | |
| | | 신청일~현재 대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0 | |
| | | 신청일~현재 대기 6개월 미만 | 5 | |
| | | 주차 공유 실적 (10) | 1년 1,000시간 공유 ※ 1시간당 0.01점 계산 (소속점 첫째자리 반올림) ※ 수사배정지는 배정일로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 | |
| 관할 동 거주여부 (10) | 거주자 | 10 | 주민등록초본 | |

※ 배정기준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의 동점자 선정순위

- ① 국가유공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 ② 전일(全日)제 차량
- ③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전자태그 부착)

※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본인신분증 사본 1부.

[별표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 기 준 | | 점수 (100) | 증빙서류 | |
|----------------------|-------------------------|-------------------------|--|------------------------------|
| 지정주차 (현행과 같음) | | 선배정 | 현장확인 우선배정 | |
| | 구획 과의 거리 (40) | 주택/점포로부터 30M이내 | 40 | 집/점포 주출입문 으로부터 직선거리 |
| | | 주택/점포로부터 60M이내 | 30 | |
| | | 주택/점포로부터 90M이내 | 20 | |
| | | 주택/점포로부터 120M 이내 | 10 | |
| 주택/점포로부터 120M 초과 | | 5 | | |
| 일반 주차 (100) | 신청후 대기 기간 (40) |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 40 | 자체확인 |
| | | 신청일~현재 대기 2년 이상 3년 미만 | 30 | |
| | | 신청일~현재 대기 1년 이상 2년 미만 | 20 | |
| | | 신청일~현재 대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0 | |
| | | 신청일~현재 대기 6개월 미만 | 5 | |
| | | 주차장 공유 실적 (10) | 1년 1,000시간 공유 ※ 1시간당 0.01점 계산 (소속점 첫째자리 반올림) ※ 수사배정지는 배정일로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 |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4) | 1등급 | 4 | 1등급 표지부착 차량에 한함 | |
| 관할 동 거주여부(6) | 거주자 | 6 | 주민등록초본 | |

※ 배정기준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의 동점자 선정순위

- ① 국가유공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 ② 전일(全日)제 차량
- ③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전자태그 부착)

※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본인신분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뒷 면>

1. 신청자격
 - 가.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 주소지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서류상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 나. 시행지역 내 사업자중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차량소유자
 - 다. 시행지역 내 회사에 근무하는 자 : 주간만 신청가능
2. 우선배정 순위
 - 가. 거주자우선주차권은 구획과의 거리, 신청 후 대기기간, 관할 동 거주여부, 주차장 공유실적 등 배정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에 의거 배정하고, 세부 배정기준표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지정주차 대상의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3. 제외대상
 - 가. 승합차 : 16인승 이상
 - 나. 화물차 :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한 차량
 -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만 원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4. 허가조건
 - 가. 구획선 주변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정받은 구획이 사용 불가 시는 사용을 취소시키고 잔액을 환불함
 - 나. 주차권 미부착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지정받은 주차구획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라. 허가 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할 수 없음
 - 마. 주차 시 차량훼손 및 도난, 주차구획내 청소 등의 관리책임은 사용자가 짐
 - 바. 거주자우선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생략)

[별지 제3호서식] <뒷 면>

1. 신청자격
 - 가.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 주소지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서류상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 나. 시행지역 내 사업자중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차량소유자
 - 다. 시행지역 내 회사에 근무하는 자 : 주간만 신청가능
2. 우선배정 순위
 - 가. 거주자우선주차권은 구획과의 거리, 신청 후 대기기간, 관할 동 거주여부, 주차장 공유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등 배정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에 의거 배정하고, 세부 배정기준표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지정주차 대상의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3. 제외대상
 - 가. 승합차 : 16인승 이상
 - 나. 화물차 :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한 차량
 -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만 원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4. 허가조건
 - 가. 구획선 주변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정받은 구획이 사용 불가 시는 사용을 취소시키고 잔액을 환불함
 - 나. 주차권 미부착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지정받은 주차구획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라. 허가 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할 수 없음
 - 마. 주차 시 차량훼손 및 도난, 주차구획내 청소 등의 관리책임은 사용자가 짐
 - 바. 거주자우선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108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9번지 일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주민 열람·공고(2018. 3.22.), 관련부서 협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변경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보라매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9번지 일대 | - | 증)6,927.6 | 6,927.6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구분 | 면적(㎡) | | | 구성비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주거 지역 | 소계 | 6,927.6 | - | 6,927.6 | 10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53.0 | 증)92.0 | 245.0 | 3.4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774.6 | 감)6,177.9 | 596.7 | 8.6 | |
| | 준주거지역 | - | 증)6,085.9 | 6,085.9 | 88.0 | |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신설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71 | 신대방동 500-14 | 신대방동4 98-52 | 일반 도로 | - | - | - |

다. 학교 결정(변경)조서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학교 | 초등 학교 | 신대방동 488-1 | 7,299.0 | 증)92.0 | 7,391.0 | 서고제2000-179호(2000.7.3) |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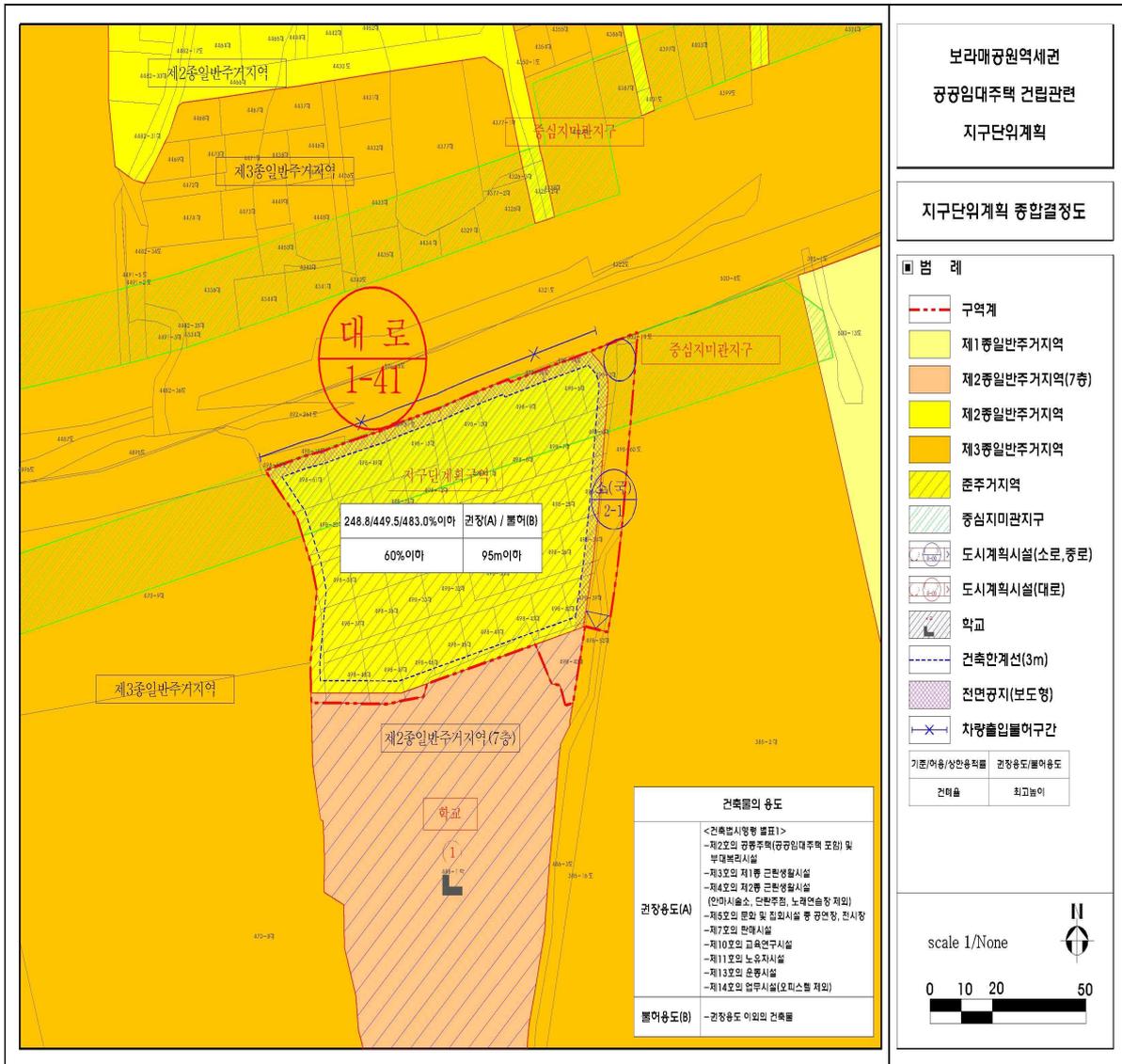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위치 | 면적(㎡) | 비고 |
|---------------------|---------|----------------------|
| 동작구 신대방동 498-9번지 일대 | 6,085.9 | 기반시설은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제외 |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 동작구 신대방동 498-9번지 일대 | 용도 | 권장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4,5,7,11,13,14호 | |
| | | 불허 | 권장용도 이외의 건축물 | |
| | 건폐율 | | 60%이하 | |
| | 용적율 | 기준 | 248.8%이하 | |
| | | 허용 | 449.5%이하 | |
| | | 상한 | 483.0%이하 | |
| | 최고높이 | | 95m이하 | |
| | 건축한계선 |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하여 지정 | |

4. 공 고 일 : 2018.11.15.(목)
5.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195)
7. 관련도서 : 열람장소 비치
8. 기 타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 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109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1. 동작구 사당동 318-105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zakk@dongjak.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1)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18-105번지 일대(舊 범진여객부지)
- 2) 면적 : 3,157m²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1) 대상지는 사당동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남성역 일대를 동작의 제2경제 축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 2)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제2·3종일반→준주거지역)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행위

1) 국토계획법 제 56조 제1항에 따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건축허가신고
-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재축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2년간
 - ※ 제한기간 중이라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제
 - ※ 법적제한기간(국계획법 제63조) : 3년이내(2년 연장 가능)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동작구청 별관 유한양행빌딩 3층 도시계획과

사. 관련도서 : 생략(동작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아. 기타사항 : 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6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1098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결손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 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18년 11월까지 증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동작구청 징수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2018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2018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단위 : 백만원)

| 번호 | 성명 | 연령 | 상호 | 업종 | 주소 | 총 체납액 | 세목 | 납부 기한 | 체납요지 |
|----|-----|----|--------------------|----------------------|------------------------|----------|------------------|----------|---------------------|
| 1 | 최현숙 | 43 | 늘푸른산후조리 원관악서울대점 | 산후조리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92 | 44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20161231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4건 |
| 2 | 안재성 | 62 | 시티건설 | 인테리어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33 | 27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20160229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2건 |
| 3 | 김봉철 | 49 | 서신전기 | 건설기계대여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5 | 19 | 취득세(부동산) | 20160331 | 2016년 취득세 등 총 32건 |
| 4 | 한창균 | 34 | 집고치는 사람들 | 실내인테리어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16길 9 | 16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20160930 |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10건 |
| 5 | 한도훈 | 34 | 삼성아트빌 | 주택건축판매(토 지보유5년미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 | 15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20130930 | 2013년 지방소득세 등 총 2건 |

2. 2018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2018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단위 : 백만원)

| 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업종 | 법인소재지 | 대표자주소 | 총체 납액 | 세목 | 납부 기한 | 체납요지 |
|----|-------------------------|-----|-------|-----------------------|-------------------------|----------|--------------|----------|---------------------|
| 1 | 주식회사 제이에스탑엔터 테인먼트 | 최기석 | 영화제작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6가길 33 | 31 | 취득세 (부동산) | 20160331 | 2016년 취득세 등 총 3건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1104호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8. 11. 15. ~ 2018. 11. 28.(14일간)
2.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3층)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의견제출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는 서울국유림관리소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경우에는 동작구 공원녹지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6.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같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02-820-9848),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1106호

공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인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 공인 폐기 및 재등록 내역

| 공인의 종류 | 공 인 명 | 서체 및 규격 | 사용및폐기 일자 | 사 유 | 신조인영 | 비 고 |
|--------|-------------------------|---------------------------|------------|--------------|---|-----|
| 직인 | 사당제2동 장인 민원 사무 전용 | 한글전서체 2.1cm × 2.1cm | 2018.11.15 | 복합인증기 교 체 |  | 폐기 |
| | 사당제2동 장인 민원 사무 전용 | 서울남산체 2.1cm × 2.1cm | | |  | 재등록 |

정 정

◆ 정 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1077호 정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보 제1571호(2018.11.8.)에 게재된 “「동작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수탁 기관 선정결과 공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정정 전]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정정 후]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동작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발령

[발령 제222호]

가. 신규임용

| 연번 | 성명 | 발령사항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김솔피 | 임기제 지방공업서기(기계)에 임함 행정국 행정지원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8.11.12~2019.11.11) | 신규 | 임용 |
| 2 | 조아혜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통신)에 임함 행정국 행정지원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8.11.12~2019.11.11)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 신규 | 임용 |
| 3 | 우자영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마을사업)에 임함 행정국 사회적마을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8.11.12.~2019.11.11)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 신규 | 임용 |

나. 의원면직

| 연번 | 성명 | 발령사항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양오승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보건기획과 | 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 (의사) |

2018. 11. 12字

[발령 제223호]

다. 근무기간 연장

| 연번 | 성명 | 발령사항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유수진 | 근무기간을 연장함 (2018.11.13~2019.11.12) | 행정지원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영양사) |

2018. 11. 13字

[발령 제224호]

| 연번 | 성명 | 발령사항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신호영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어르신청소년과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
| 2 | 양다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8.11.14.~2019.4.13.) | 노량진제2동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

2018. 11. 14.字

[발령 제225호]

| 연번 | 성명 | 발령사항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임현진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8.11.18.~2019.11.17.) | 흑석동 | 지방행정서기 |

2018. 11. 18.字

[발령 제226호]

| 연번 | 성명 | 발령사항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이현주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8.11.25.~2019.11.24.) | 사당제4동 | 지방행정서기 |

2018. 11. 25.字.

동
작
구
보

제
1
5
7
3
호

동
작
구



www.dongjak.go.kr

 동 직 구